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21진정0262600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원격업무 이용 시 보안서약 강요

진 정 인 ○ ○ ○

피진정인 교육부장관

주 문

교육부장관에게,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7조(원격근무 보안) 별지 서식 '보안서약서'의 서약 내용이 원격근무자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도록 개정하고, 그 내용을 전국 교육청에 전파하기를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교직원으로 근무하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재택근무, 출장 시 이 시스템을 통해 원격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대 6개월마다 '원격업무지원서비스(EVPN)'를 신청하고 사용 결재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매년 "4. 나는 여타 보안사항들을 성실히 준수

하며 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도 감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보안서약에 동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서비스 신청 시마다 준법서약에 준하는 항목에 동의하도록 하는 것은 인권침해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한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은 학생·교직원의 개인정보(학적, 성적, 학교 생활, 대입전형자료 등)를 대규모로 관리·보유하고 있는 시스템이며,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근거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서 매우 높은 보안 수준이 요구된다. 교육청 또는 학교는 스쿨넷(내부망)을 통해 직접 접속이 가능하지만, 가정 또는 출장지에서는 원격업무지원서비스(EVPN)를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다. 신청 가능한 최대 사용기간은 6개월이며, 사용기간 중 비밀번호 변경 주기는 3개월이다. 비밀번호 변경 시에는 ‘보안서약서’ 동의 절차는 없다.

보안서약서 징구는 국가정보원의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기반으로 제정된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근거하고 있다. 동 지침에 규정된 서약서 양식에는 ‘나는 기타 보안사항들을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는 문구가 있으나, 각 교육청마다 해당 기관의 지침에 맞게 문구를 조정할 수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진정인의 전화조사 진술,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원격근무 보안서약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고 한다)은 전 교육행정기관에서 교무학사, 인사, 회계 등을 처리하는 행정시스템이다. 재택근무, 출장 등의 사유로 근무지 외의 장소에서 이 사건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원격업무지원서비스(이하 ‘이 사건 서비스’라고 한다)를 신청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나. 이 사건 서비스 사용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동 서비스 신청 시 ‘원격근무 보안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고 한다)에 동의하여야 한다. 이 사건 서약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원격근무 보안서약서

본인은 원격근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부여받은 인증관련 정보 및 매체를 타인에게 유출하지 아니한다.
2. 나는 원격근무 중 작성·저장·열람·출력한 문서는 업무 목적에만 활용하고 타인에게 유출하지 아니한다.
3. 나는 원격근무용 소프트웨어 및 전산장비를 업무목적에만 활용하며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및 기타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최신 상태로 유지한다.

다.

4. 나는 여타 보안사항들을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도 감수한다.

동의

5. 판단

「대한민국헌법」 제19조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내면적 확신에 도달하는 것과 관련한 사항뿐만 아니라, 양심을 언어로 표명하거나 또는 표명하지 않도록 강요받지 않을 자유를 포괄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에는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 즉, 부작위의 자유도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서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개인의 내심을 표명하는 것을 전제하는 행위로서, 무엇을 맹세하고 약속할 것인지에 관하여 스스로 그 내용을 구체화하여 완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당사자가 아닌 다른 일방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고 서명하는 형태의 서약서 작성은 그 행위 양태 자체로 작성자의 기본권을 제약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서약서를 징구할 때에는 상대방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서약서 징구의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법적 근거, 서약서 내용의 불이익한 정도, 제출의 강제성 등을 종합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서약서의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원격근무자는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7조(원격근무 보안) 제5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안조치

에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각급기관의 장은 원격근무자에게 동 보안조치 등이 포함된 보안서약서를 징구할 의무가 있다. 이와 더불어 이 사건 시스템은 높은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임을 감안하면, 이 사건 서약서의 징구 목적은 원격근무자들에게 보안 사항을 점검하게 함으로써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함으로 이해되고, 보안서약서의 내용이 이러한 취지에 충실하다면 보안서약서를 징구하는 행위 그 자체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서약서의 경우, 원격근무자가 보안을 위해 따라야 할 당연한 의무를 나열하고 이를 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도 감수한다'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하는 것을 넘어 그에 관한 진술권, 항변권 등의 방어권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과 처벌을 수용할 것을 의미하므로 서약자의 정당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도록 하여 권리를 제한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해당 문구는 다른 종류의 서약서 끝부분에서 관용적으로 기입되기도 하는 내용이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미 이 같은 내용의 문구에 서약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여러 차례 결정한 바 있다.

또한 감염병 전파 예방을 위해 재택근무가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등 원격근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이 사건 서비스 이용을 위해 보안서약서에 동의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서약서 제출이 온전히 자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서약서는 원격근무자들에게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서약서에 동의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및 제

19조에서 보장하는 진정한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서약서는 그 내용이 문제되는 것임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이 사건 서약서의 서약 내용이 원격근무자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도록 준수사항 고지 및 경각심 고취 수준으로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7조(원격근무 보안) 별지 서식 ‘보안서약서’의 서약 내용을 개정하고, 그 내용을 전국 교육청에 전파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7. 2.

위원장 이 상 철

위원 문 순 희

위원 윤 석 희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2.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7조(원격근무 보안)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등이 재택근무, 출장지 현장 근무, 또는 파견 근무(제47조의2에 따라 기관 정보통신망 전용(專用) 단말기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시 인터넷을 통해 본인 인증을 거쳐 기관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이하 “원격근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④ 생략

⑤ 원격근무자는 각급기관의 장 등이 원격근무용 단말기(개인 소유의 정보통신기기를 포함한다)의 보안을 위하여 취하는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각급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보안소프트웨어 설치·운영
2. 사이버공격 등으로 인한 자료유출 사고 발생 시 각급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점검 및 제108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협력
3. 소속된 기관에서 지급받은 단말기의 경우 제72조에 따른 단말기 보안

대책 준수

- ⑥ 각급기관의 장은 원격근무자에게 제5항에 따른 보안조치 등이 포함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직위·임무에 부합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부여 및 보직변경·퇴직 등 변동사항이 발생 시 접근권한 조정 등의 절차를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 ⑦ 생략